

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며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자립·자활을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, 이후 추가적인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 지원 근거가 상실됨.
- 이에 성매매집결지 해체가 공식화될 때까지 자활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, 해당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종전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(안 부칙(조례 제1929호) 제2조)

☐ 개정조례안: 별첨

☐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☐ 관계법령발췌서: 해당없음

☐ 관련사업계획서: 해당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: 별첨

☐ 사전예고결과: 예정

-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0월 중 (20일간)

☐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예정

- 심의회 개최일 : 2026. 11월 예정

☐ 기타 참고사항: 별첨

- 현행 조례
-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영향분석 결과서

과주시 조례 제 호

과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례 제1929호 「과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여성가족과 ☎940-8660
입안자	여 성 가 족 과 장	김 영 미
	성 매 매 집 결 지 정 비 T F 팀 장	지 의 정
	담 당 자	김 지 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(2023. 5. 9. 조례 제1929호) 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6 <u>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</u> <u>다. 다만, 이 조례의 시행 중에</u> <u>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</u> <u>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</u> <u>간 경과 후에도 제6조, 제9조</u> <u>및 제10조를 적용한다.</u>	부칙(2023. 5. 9. 조례 제1929호) 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과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 부칙 제2조 삭제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 유효기간 삭제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활지원 추진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.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2031년
대상자 수(명)	65 (중복인원포함)	21	18	11	10	5
자활지원금	1,440,400	463,360	397,880	226,760	226,600	125,800

- 대상자 수 산출 : 연평균 신규 신청자 5명 ('23~26년 평균)

- (2027년) 21명 = 기존 대상자 16명 + 신규 5명

- (2028년) 18명 = 기존 대상자 13명 + 신규 5명

- (2029~2031년) 해체 종료단계로 신규없이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자연감소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7년 본예산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김영미
 복지정책국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장 지의정

□ 기타 참고사항: 현행 조례

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

(제정) 2023.05.09 조례 제1929호

(일부개정) 2024.11.07 조례 제2147호

(일부개정) 2025.07.18 조례 제2245호

(일부개정) 2025.12.26 조례 제234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·정비함에 있어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, 탈성매매 및 자립·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성매매”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2. “성매매피해자”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성매매집결지”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-12(연풍3길) 일원을 말한다.
4. “탈성매매”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“성매매피해자 등”이라 한다)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성매매피해자

등의 보호, 탈성매매 및 자립·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과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.

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5. 7. 18>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, 탈성매매 및 자립·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2.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
3.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
5.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, 주거, 의료, 법률,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
6.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7.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·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내용)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생계비, 주거지원비, 직업훈련비, 자립지원금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7조(지원신청)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지원결정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원대상자 관리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중지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2.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3.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

제11조(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,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,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, 탈성매매 및 자립·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비밀누설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, 탈성매매 및 자립·자활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23. 5. 9. 조례 제192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

만, 이 조례의 시행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제6조,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.

<개정 2024. 11. 7., 2025. 12. 26>

부칙 <2024. 11. 7. 조례 제214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 7. 18. 조례 제224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5. 12. 26. 조례 제234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기타 참고사항: 부패영향평가 결과서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관 리 번 호	2026-46		
자치법규명	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		
평 가 담 당 부 서	감사관	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명	행정7급 윤수진
주 관 부 서	여성가족과	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명	행정7급 김지혜
평 가 결 과 통 지 일	2026. 9. 21.		
통 보 내 역	원안동의		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	조 치 사 항
-	-		-

□ 기타 참고사항: 성별영향평가 결과서



파 주 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(2026A경기파주051)

1. 여성가족과-19310(2026.09.28)호와 관련합니다.
2.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 개정안은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에 해당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종료합니다. 끝.

여성정책전문위

원

권문영

여성정책팀장

조영라

여성가족과장

김영미

2026. 9. 29.

협조자 주무관

김지혜

시행 여성가족과-19436

접수

우 10932

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(아동돌)

/ <http://www.paju.go.kr>

전화번호 031-940-8684

팩스번호 031-940-4419

/ myjihee@korea.kr

/ 비공개(5)

□ 기타 참고사항: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

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

1. 자치법규명	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(일부개정)	
2. 소관부서	부서명	여성가족과
	담 당	팀장 지의정 담당자 김지혜
3. 관련법령 등	해당없음	
4. 주요골자	○ 조례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활 지원 추진(부칙 제2조)	
5. 심사의견	○ <u>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</u> - 「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은 성매매 집결지 해체가 공식화될 때까지 자활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-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<u>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.</u>	
6. 심사담당자	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(4171)	